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45

발의년월일 : 2012. 6. 29.

발 의 자 : 이재형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함.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8조